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3.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2. 3. 16.

경제도시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홍복조 의원 등 6명(배지훈, 이신자, 박정환, 원종진, 정찬근)
- 발의일자: 2022. 3. 4.
- 회부일자: 2022. 3. 4.
- 검토기간: 2022. 3. 7. ~ 3. 11.(5일간)

###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드론사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불임
-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비용추계 : 비대상
-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14.)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4차 산업의 핵심 유망사업인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드론활용의 촉진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제9조 제2항의 수정의견은 인용조문의 오기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26
----------	----------

발의일자: 2022. 3. 4.

발의자: 홍복조, 배지훈, 이신자,  
박정환, 원종진, 정창근

##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드론사업의 육성, 드론 활용의 촉진,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라. 드론사업의 육성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붙임
- 나. 관계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다. 비용추계: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정책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및 마케팅 사업
3.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
4.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5. 드론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체험·안전 프로그램 실시 사업
6. 드론스포츠 관련 기반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 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